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08일

신갈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복	정 *복 1966-02-06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(신갈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20